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647
----------	------

제출년월일 : 2009. 6.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행정규제 완화(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대상 음식점 영업장 면적 완화)를 통한 민원 해결
- 2008년 종합감사 개선·권고에 따른 정비,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 주요골자

-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대상으로 조정(안 제2조제2호).
- 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선기간 부여 후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함(안 제8조제2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9. 4. 28. ~ 2009. 5. 18.(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9조의2의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나목 중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165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을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3호 중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를 각각 “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및 “제3호서식에 의하여”를 “제2호서식에 따라” 및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제3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가목 및 나목 중 “변경할”을 “변경한”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 및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하되 개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조에 따라”로 하고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 한다.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봉투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을 정하되,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소요되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영 제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를 “영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로 하고 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 “지방세법의 규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별표 제1, 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클린사업소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클린사업소장 이 기 용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활용담당 백 현 숙
	담당자 성명·전화	오 영 탁 (행정 3541)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비닐, 병뚜껑 등</u> 이 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수분제거 후 배출 - <u>패각류, 견과류</u> 껍질, 생선 뼈, 육류 뼈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 관련)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제8조, 법 제15조 관련)	20	50	10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3조 관련)	100	300	500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제7조제1호 관련)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처리기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즉시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처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일자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자가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 계획	위탁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신고인 :				년	월	일	
				(서명또는날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제7조제2호 관련)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 활 용	재활용량 (kg/년)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년)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u>안산시장 귀하</u>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의제1호·제3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p> <p>나.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점객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사업장.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주류 등의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제외한다.</p> <p>3. ~ 6.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제16조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p> <p>나.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200제곱미터</p> <p>3. ~ 6.(현행과 같음)</p>
<p>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3.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할 수 있다.</p>	<p>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p> <p>1. ~ 2.(현행과 같음)</p> <p>3. 제6조제1호에 따라</p>
<p>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p>	<p>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p>

현 행	개 정 안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1.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p> <p>2. 제1호에 따라</p> <p>3. 제1호에 따라</p>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생략)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p>1. (생략)</p> <p>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p> <p>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할 경우</p> <p>다.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제2호서식에 따라 제3호서식에 따라</p> <p>3.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변경한 경우 나 변경한 경우 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생략)</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삽입)</p>	<p>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현행과 같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배출·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에 따른 법 제68조제3항제3호 및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다만,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하되 개선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 가격으로하고,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p> <p>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영 제7조에 따라</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p>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대하여 징수하는 일반봉투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을 정하되 경우의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소요되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p> <p>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④ ~ ⑤(생략)</p> <p><u>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생략)</u></p> <p>② 시장은 영 제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u>당해</u>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u>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u></p> <p>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u>지방세법</u>의 규정에 따른다.</p>	<p>③ 삭제</p> <p>④ ~ ⑤(현행과 같음)</p> <p><u>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현행과 같음)</u></p> <p>② 영 제8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6호에</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에 따라</p> <p>.....</p> <p>.....</p> <p>..... 해당</p> <p>..... 해당</p> <p>.....</p> <p><u>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u></p> <p>..... 제10조제3항에 따른</p> <p>.....</p> <p>②</p> <p>.....</p> <p>..... 「지방세법」</p> <p>.....</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u>비닐·병뚜껑·폐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비닐·병뚜껑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u>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u>수분제거 후 배출</u> - <u>폐각류, 견과류 껍질, 생선 뼈, 육류 뼈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u>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5	10	20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5	10	20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2.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 관련)	20	50	100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제8조, 법 제15조 관련)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 관련)	100	300	50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3조 관련)	100	300	500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7조제1호 관련)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처리기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즉 시		
신 고 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 처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자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kg/일	kg/일	kg/월	처리방법	처리자
자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kg/월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자가감량	kg/월				
자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7조제1호 관련)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처리기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즉 시		
신 고 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 처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자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kg/일	kg/일	kg/월	처리방법	처리자
자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kg/월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안산시장 귀하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제7조제2호 관련)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 활 용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제7조제2호 관련)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 활 용	재활용량 (kg/년)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년)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